

● 제303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7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: 2893)

2021. 11. 29.

보건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【서울특별시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2893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출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시장
- 나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추진과 사업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,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28조의 2제1항제5호).
- 나.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지원에 대한 근거, 지원 대상, 지원 내용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(안 제28조의3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8. 5.~8. 25.)결과: 의견없음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추진과 사업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,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고자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임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규정(안 제28조의2제1항제5호)
- 개정안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”을 신설하는 내용임. (안 제28조의2제1항제5호)
 -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은 중앙정부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서울시가 2021년 시행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(일명 온서울 건강은 사업)이 있음.

신·구조문대비표	
현행	개정안
<p>제28조의2(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)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8조의2(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②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지원에 대한 근거, 지원 대상, 지원 내용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(안 제28조의3 신설)

- 개정안 제28조의3(참여자 지원)을 신설하여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(안 제28조의3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28조의3(참여자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28조의2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2. 제28조의2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<p>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건강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사업진행에 필요한 장비·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장비·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참여 실적, 횟수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

- 상위법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3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범위에 신체활동장려를 추가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, 조사·연구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¹⁾ 있는 상황이며, 교육, 조사·연구 외의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관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미비인 상황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.
- 다만, 보건복지부의 「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(신체활동)」에 신체활동 실천 이력, 걷기 마일리지 등 신체활동 우수자에 대한 보상 홍보물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.
 - 구체적으로 2019년 지침서에는 신체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,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보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며, 2020년에는 기프트콘, 지역화폐가 추가되었음. 그러나 해당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서울수도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임.

나.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·개정 범위와 관련하여

- 제정하는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,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

1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3(신체활동장려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
2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·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[시행일: 2021. 12. 4.]

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즉,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음.²⁾

- 그러나 법령에 특별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에 대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법령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.
- 이에,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³⁾, 「국민건강증진법」⁴⁾⁵⁾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보충적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 - 다만, 조례 개정에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미비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에 있어 참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2)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6추52

3)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(慢性疾患)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4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 <생략>

5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생략>

3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추진과 사업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,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임.
-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, 상위법에서 특별하게 위임한 부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언적 수준에서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.
- 그러나 시민 수익적인 조례의 경우, 조례를 통한 보충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입법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.
- 반면, 상위법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의 시행일 이전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태에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관계 법률의 입법 추이를 고려한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.

문 의 처

우현재 입법조사관 (02-2180-8155)